

의안번호	제428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27일

#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8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의자 :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박진희

##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조례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용어의 정의, 도의 책무, 도민의 책무, 민간의 참여조성 조문을 상위법 내용으로 인용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제6조, 제9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함 (안 제7조의2)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함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규정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 호
- 다. 협의 :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예우와”를 “예우 및”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희생·공헌자”란”으로,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일제로부터”를 “일제로부터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호와”를 “수호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생명과”를 “생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예우와”를 “예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예우와 지원에”를 “예우 및 지원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예우와 지원대상)”을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우와 지원대상”을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나라사랑 정신”을 “나라사랑정신”으로, “조성하는데”를 “조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 중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생·공헌자의 예우와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9조의 제목 “(민간의 참여조성)”을 “(민간의 참여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양,”을 “선양 및”으로, “여건조성”을 “여건 조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국가보훈 기본법</u>」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u>예우와 지원</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희생 · 공헌자</u>”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u>법령</u>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u>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u></p> <p>나. <u>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u></p> <p>다. <u>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u></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국가보훈 기본법</u>」 ----- ----- ----- <u>예우 및</u> ----- ----- -----.</p> <p>제2조(정의) ----- ----- -----.</p> <p>1. “<u>희생 · 공헌자</u>”란 ----- ----- ----- ----- <u>법령</u>에서 ----- ----- -----.</p> <p>가. <u>일제로부터의</u> ----- -----</p> <p>나. ----- <u>수호 또는</u> -----</p> <p>다. <u>대한민국</u> -----</p>

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와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도의 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

라. ---- 생명 또는 -----

2. “국가보훈대상자”란 -----  
----- 유족 또는 가족-----  
----- 예우 및 -----  
-----.

3. ----- 이란 --  
----- 예우 및 지원과 -----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 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장관-----  
-----.

제4조(도의 책무) -----  
----- 나라사랑정신-----  
----- 조성하기 위하여 -----  
-----.

제5조(도민의 책무) -----  
----- 나라사랑

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예우와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  
-----.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  
----- 조례에서 -----  
-----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  
----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 사람-----  
-----  
-----  
-----  
-----  
-----.



1.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65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

③ (생략)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  
랑정신의 선양, 보훈문화의 창  
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순직  
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  
-----  
----- 선양 및 -----  
-----  
----- 여건 조성-----  
-----.

## 관련법령 발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

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직군경의 유족과 공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부에 등록된 도내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대상 산출  
· 순직군경 유족 : 495명, 공상군경 본인 : 562명
- 기 지원중인(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금과 동일한 월 30천원으로 추계함

#### 나. 추계 결과 : 24. 1월부터 향후 5년간 1,837,800천원 소요 예상

- (순직군경 유족) 459명 × 30천원 × 12개월 = 165,240천원
  - (공상군경) 562명 × 30천원 × 12개월 = 202,320천원
- 연간 367,56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67,560	367,560	367,560	367,560	367,560	1,837,800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165,240	165,240	165,240	165,240	165,240	826,200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202,320	202,320	202,320	202,320	202,320	1,011,6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67,560	367,560	367,560	367,560	1,837,800
	지방세	367,560	367,560	367,560	367,560	1,837,8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